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-4호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「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오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"공무국외여행"을 "공무국외출장"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 내지 제11조).
 -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 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함.
 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함.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음.
 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.
 -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함.

- 라.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(체크리스트)을 마련함(안 별표).
- 마.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하여 정함(안 제12조제1항).
 - 회기중,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,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,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
- 바.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).
- 사.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, 위원회 심의·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아.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,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자. 국가공식행사, 국제회의,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·집행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5조).
 - ※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
 -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,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%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19년 3월 7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| □ 조 | 례 | 명 : | 오산시의회 | 의원 | 공무국외출장 | 규칙안 |
|-----|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|
|-----|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|

□ 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| 여 부 | 의 | 견 | 비고 |
|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| <u> </u> | 찬성 | 반대 | <u> </u> | Ľ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
 - 2.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
 - 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
 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 - 5.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
 - 6. 기타 오산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 외출장 하는 경우
- 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오산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 이라 한다)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장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, 민간위원은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.

- 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 - 1.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
 - 2.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
 - 3.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지체 없이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- 제10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,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되고, 서기는 의정팀장이 된다.
- 제11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「오산 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1.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. 다만,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.
 - 2.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
 - 3.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 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
 - 4.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
 -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.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.

- 제13조(출장계획서 제출)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 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(이하 "출장계획서" 라 한다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오산시의회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출장보고서 제출)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이하 "출장보고서"라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예산 편성·집행)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,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 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, 국제회의,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·집행할수 없다.
 -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후관리 등)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5조 관련)

| 항목 | 심사기준 | 예 | 아니오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
| |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? | | |
| 출장의 | 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? | | |
| 필요성 | 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? | | |
| | 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 | | |
| | 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 | | |
|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| 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? | | |
| 타당성 | 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 | | |
| | 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? | | |
| | 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 | | |
| | 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? | | |
| 출장자의 적합성 | 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? | | |
| | 3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 | | |
| | 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? | | |
|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| 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? | | |
| | 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? | | |
| 출장경비의 | 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 | | |
| 적정성 | 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 | | |
| 감염병 및 | 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? | | |
|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| 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 | | |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무국외출장계획서

1. 출장개요

| 출장목적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
| 출장동기 및 내용 | | | | | | | |
| 출장기간 | | . ~ | (| 일간) | | | |
| 출 장 국 | | | | | | | |
| |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 | | | | 연령 | 출 장 경 비 | |
| | 74 | 직급 | 78 78 | 7 6 원 | 1.2 | 금 액 | 부담기관 |
| | 계 | | 명 | | | 천원 | |
| 출 장 자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2. 출장일정

| 월 일 (요일) | 출발지 | 도착지 | 방문기관 | 업 무 내 용 | 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○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

| 연 번 | 소 속 | 직 급 | 성 명 | 업 무 내 용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^{※ 2}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3. 출장경비

| | | 체 재 비 | | | | | |
|-----|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성 명 | 계 | 일 비 | 식 비 | 숙박비 | 항공운임 | 준비금 | 기 타 |
| 계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4. 출장효과

「별지 제2호 서식〕

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

1. 보고서 규격 및 분량

O 보고서의 규격은 A4(210mm × 297mm)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,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.

2. 보고서 구성형식

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.

-<목차 구성 예시>

I. (서론부분) :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

Ⅱ. (본론부분) :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·분석내용 등

Ⅲ. (결론부분) :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

Ⅳ.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: 저자・서명・출판사・출판년도・

총면수

O 보고서의 맨 첫 장(겉표지)에는 제목·제출연월·소속의회를, 둘째 장(속표지)에는 출장국·출장목적·출장기간·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,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

(1) 겉표지 예시

(2) 속표지 예시

<보고서>

○○ **제도<u>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</u>** (제 목)

> ○○년도 ○월 (월까지만 표시)

> > ○○의회

공무국외출장 개요

- 1. 여 행 국 :
- 2. 출장목적 :
- 3. 출장기간 :
- 4. 보고서 작성자 : 소속위원회, 성명
- 5. 출장자 인적사항(2인 이상인 경우)

| 소속위원회 | 성 명 | 비고 |
|-------|-----|----|
| | | |

3. 첨부자료

-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항공권 및 열차·버스 승차권,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
 -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·회의 장면 사진 등

4. 작성시 참고사항

- O 보고서는 최신 정보·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, 보고내용의 활용방안,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, 기 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,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·법령·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
-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